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6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김영진·박희승·조승래

이재정 • 한병도 • 박민규

서삼석 · 채현일 · 강유정

임호선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려는"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 중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	②
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u>하려는</u> 경우에는 미리 국회	- <u>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한국은</u>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하게 하려는</u>
<u>당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
	제은행의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	<u><</u> 삭 제>
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	<u><삭 제></u>
입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	<u><삭 제></u>
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 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생 략)

- 제3조(출자방법) ① ~ ④ (생략)
 -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출자방법)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u>제2조제3항</u>	